

집단에너지산업 관련 법률(령) 제도 및 규제개선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본지 정책기획실

우리협회(KDHA)는 집단에너지산업의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과 경쟁력의 우위확보를 통해 집단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함께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집단에너지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와 법(령) 및 제도개선을 2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난방 열 요금 연동제 및 상한제 등 열 요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비롯한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안과 석유사업법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상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의 조정안, 전력시장 CHP 용량요금지급관련 조정안 등 그리고 도시가스사업 법령의 개정안, 전기사업법령개정안, 대기환경법령개정안, 열병합발전 송전접속 설비 이용방법 개선안, CES 사업 도입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안 등 추진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협회는 최초로 '열 요금 연료비 연동제 주기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06년 7월 12일의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의견(안)을 제출한 것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협회지 '집단에너지'는 그 경과 중 특히 2005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집단에너지산업 규제개혁 개선안에 대한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안 조치사항과 산업자원부의 개선안 추진 일정현황, 그리고 2006년 6월 23일 입고 예고한 집사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사항만을 지면의 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우리협회(KDHA)의 규제개선 (안) 정부(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 2005.11.15

- ▶ "도시가스 공급의무조항신설" 등 총 4개 분야 8개 항목
-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

- 도시가스 공급의무 조항신설
- 도시가스공급권역 지정시 경쟁체제도입
- 도매가스업자 직공급 조건개정
- 전기사업법령 개정
 - 열병합발전기 송전접속설비 이용방법 개선
 - CES사업 도입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 사용연료 규제개선
- 집단에너지 사업법령중 열요금관련 규제 개선
 - 열요금 상한제 폐지
 - 집단에너지 열요금 결정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

○ 정부 규제개선 추진방안 확정 - 2006. 5. 9 규제개혁기획단

- ◎ 지역난방에 대한 열 요금 상한제 규제, 열 요금 연료비 연동제 개선
- ◎ 지역난방구역 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의무 부여 등

※ 우측면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방안 참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산자부 공고 2006. 6. 23

□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 시장이 개방('99년)된 이후, 도시가스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체제 및 활성화 기반 강화
- 에너지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한국에너지협회(KDHA)는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 개선방안	산자부 행정조치현황
<p>○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난방사업자 또는 참여희망자가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시, 에너지사업자들의 의견 진술기회 보장방안 마련 - 사업계획서 설명태도 관련 감점 등 자의적 평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 - 소비자에게 유리한 공급조건 제시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및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p>'06. 4/4 국회제출 '06. 4/4 국회제출 '06. 7월 산자부고시 (상동)</p>
<p>○ 지역난방구역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자나 지역난방사업자 등이 취사용 가스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공급의무 부여 (도시가스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설치한 가스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할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되, 공급의무 미이행시 공급구역 조정 후 별도 사업허가 가능하도록 규정 	<p>'06년 하반기 의원입법 계류중</p>
<p>○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폐열사용 규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거용 소형 열병합발전의 폐열활용 시설은 열생산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관련시설 설치시에는 지역난방사업자와 협의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열생산설비 산설규제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집단에너지 설비이용에 따른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 	<p>'06. 3/4 향후추진계획 협의</p>
<p>○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관련</p> <p>CES사업의 공급능력기준 및 구역제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S사업 허가시 시설용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전력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 한전의 배전망 미보유 구역에 대한 CES사업 허용 명확화 - 전력시장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제 및 전력 보완공급 약관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p>CES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규정 관련 중첩적 인허가 절차 개선 	<p>'06. 3/4 관련규정개정 '06. 7월 고시 또는 훈령제정 '06. 6월 공급약관검토후 개선안마련 '06. 4/4 국회제출</p>
<p>○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난방방식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p>'06. 12월 발표예정</p>
<p>○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간접보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제약 발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p>'06. 3/4 향후추진계획 협의</p>
<p>○ 열전용보일러(HOB)용 가스 직공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량 및 용도에 관계없이 지역난방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과도한 가스공급 관련 규제로 경쟁의 왜곡이나 설비투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p>'06년 하반기</p>
<p>○ 열병합발전기 송전접속설비 이용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민간 발전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망 접속비용 부담방안을 마련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의 접속설비에 대한 조속한 비용정산 절차 이행) - 공용접속망 구성의 최적화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전과 발전회사간의 합리적 접속비용 부담 개선방안 마련 	<p>'06. 3/4</p>
<p>○ 천연가스(LNG) 도매요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용도별로 세분화된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을 천연가스의 저장비용 및 네트워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공급비용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p>'06. 8~12월 연구용역</p>
<p>○ 지역난방 요금규제 관련</p> <p>○ 지역난방에 대한 열요금 상한제 규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요금 중 고정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지역난방 요금관련 종합용역 결과 반영) 	<p>'06. 12월 (잠정) '07. 1/4 (공청회-잠정) '07. 2/4 (상한고시-잠정)</p>
<p>○ 지역난방의 열요금 연료비 연동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 부과금 등 정부방침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열요금에 즉시 반영하고, 연료비 변동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가능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p>'06. 6월 연구용역추진 '06. 7월</p>
<p>○ 발전사업용 LNG에 대한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적정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여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하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

-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네트워크산업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소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1.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의 열거래 제도 도입(안 제2조)

- 사업자간의 열배관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의 제고를 위해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열거래 기반을 마련(안 제2조 8호 개정)

2.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시 민간참여 활성화(안 제5조)

-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고하여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 및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와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기회를 보장(안 제5조 제2항 개정)
- 사업자(사업을 하고자하는 자 등 포함)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3.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 대한 공급의 명확화(안 제5조의 2)

- 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의 2 신설)
- ※ 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서의 공급절차 등 현재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필요사항은 시행규칙에서 후속 규정

4. 공급규정의 신고 및 공고절차 개선(안 제 17조)

-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전기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공급규정 중복 인·허가 절차를 개선(안 제 17조 제2항 신설)
-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한 공급규정 공고방법을 개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도록 개선(안 제 17조 제3항 개정)

5.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 명확화(안 제18조)

-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 공급규정에 포괄 위임된 규정을 부담금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항 개정)
- ※ 「부담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와 징수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 ※ 법개정 이후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후속적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

6. 확인·점검 실시 요건의 구체화(안 제 24조)

-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하여 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괄적으로 확인점검이 가능한 규정을,
-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공급과 관련한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또는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인점검의 실시요건을 제한적으로 운영(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7.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범위의 합리화(안 제41조)

- 기후변화협약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41조 제3호 신설)

8.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7조의 2)

-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1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 2 신설)
- 산업자원부장관은 분쟁발생시 위원회에 회부(제2항)하고,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조서를 작성·통보(제3항)
- 분쟁당사자의 의결사항 이행 노력의무를 규정(제4항)하고,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제5항)

9. 법집행과 관련한 업무의 위탁을 명시(안 제53조)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검토 등 업무의 일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명확화(안 제53조 제2항 신설)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 열원시설 신설 허가 예외대상의 명확화(안 제8조)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8조 제2항 신설)

- 공급대상지역 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제1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열생산시설(제2호) 및 사업자의 공급부족 시(제3호)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 등은 허가 예외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열원시설 신설 허가 기준 명확화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제1항)하고,
- 공급대상지역 지정 목적과의 부합여부 및 사업자의 공급능력 부족 등 허가기준 명확화(제2항), 해당 지역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부여(제3항) 및 세부 허가기준 고시(제4항) 등을 규정

2. 사업허가(신고) 경합시 선정방법 명확화(안 제7조)

- 신규 사업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다양하게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도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7조 제3항 개정)

3. 사업허가 시 구비서류(지자체 의견) 완화(안 별표 3 및 제7조)

-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할 지자체장 의견 서류를 삭제하고, (별3 제10호 삭제)
- 산자부장관은 사업허가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제7조 제4항 신설)

4. 공사계획 승인 처리시기 단축(안 별지 제16호)

-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개선(안 별지 제16호 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령개정(안)관련 협회 의견(안) 산자부에 제출 - 2006. 7. 12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86,187호)와 관련하여 협회 회원사의 개별의견을 제출받아 실무팀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업계의견을 마련 지난 7월12일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에 검토의견 및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새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신청」가능자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안)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신청가능자의 범위에 “사업자(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포함)”(법 제5조3항-신설)이라는 내용은 지정 신청 가능자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사업허가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 할 경우 사업 실현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신청만 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 포함)”을 삭제하여 허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

□ 「분쟁조정위원회」신설 조항 삭제 의견(안)

「분쟁조정위원회」신설(법 제47조의2-신설)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해 당사자간 자율조정이 바람직하고, 공정경쟁 및 자율 시장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취지에 역행’ 등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안)

□ 「열생산시설의 허가를 받은 기존시설 증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에서 삭제 (안)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 생산시설」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 내용 중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영 제8조2항1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증설’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경우 기존시설의 무한증설가능으로 이중투자 발생, 또한 신설되는 ‘열 거래제도’를 이용하여 사업허가 없이도 실제 열 판매사업 가능, 고시 지역 내 이중투자 발생 및 간접적인 열요금인상 요인, 고시지역 사업자간 분쟁소지 등 사유로 “증설의 경우” 삭제하는 (안)

□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기존 고시지역은 「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현행선정기준 유지, 고시 외 지역은 소비자가 선정토록 한다는 (안)

「사업의 허가 신청 등」 “산업자원부 장관은 법제5조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기준을 정하여~”(시행 세칙 제7조 ③)라는 내용에 대하여 고시지역은 현행선정기준에 따르며 고시의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결정할 고시의 지역의 사업자를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할 이유가 없고, 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포함)” 삭제를 하는 (안) **ㄷ**